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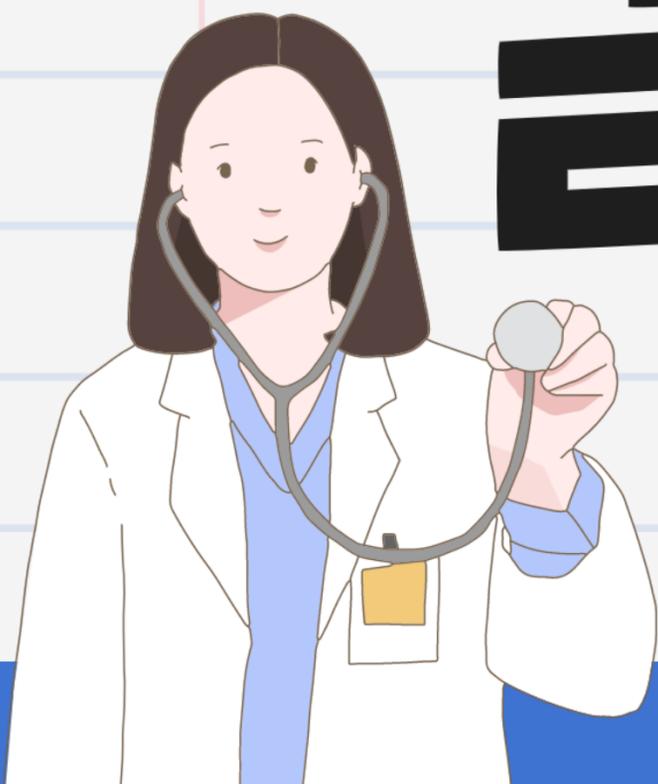


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이수 후

시범사업

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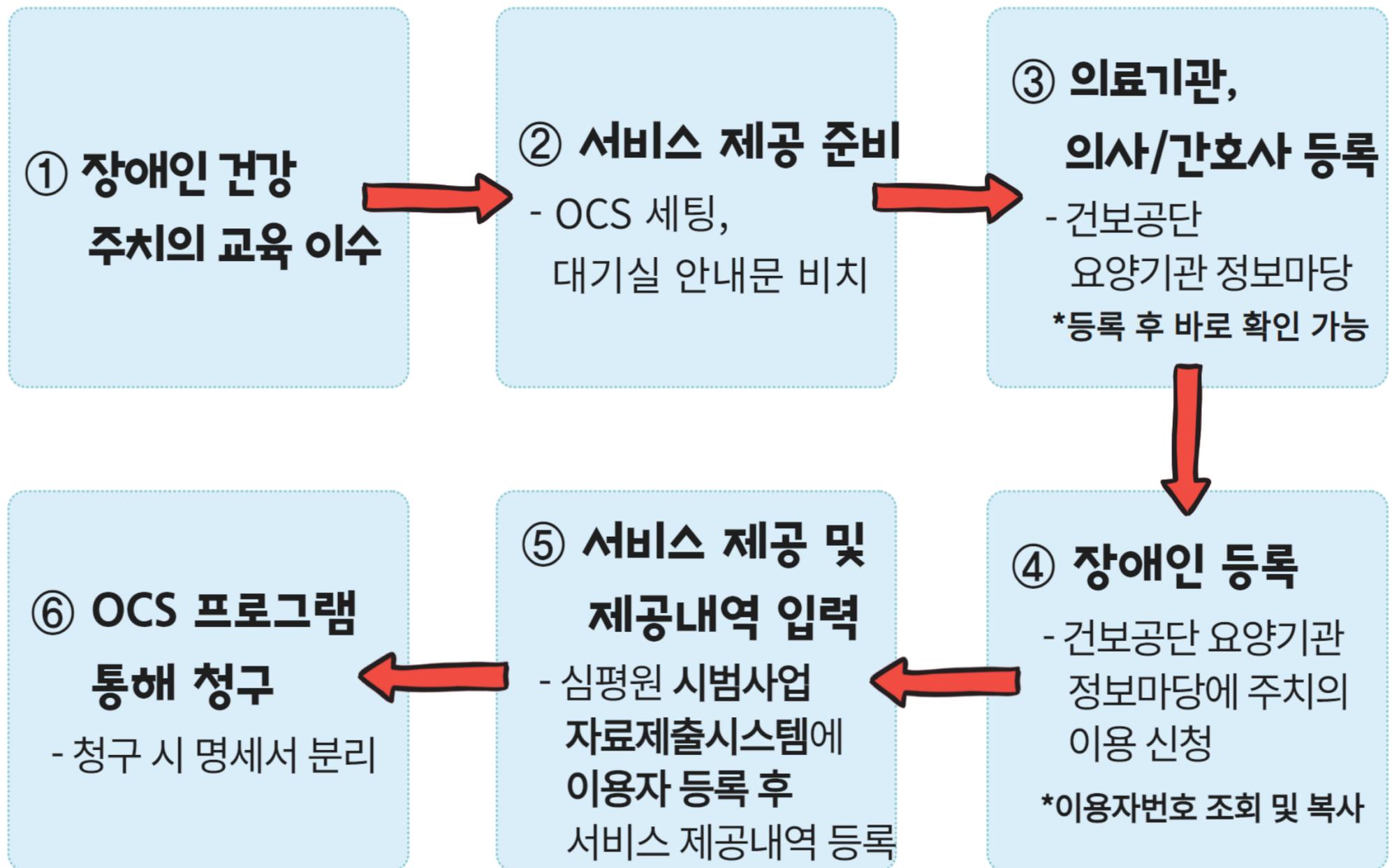
길라잡이



#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 후 절차



장애인 건강 주치의 **교육 이수**부터 **청구**까지 참여 흐름도



#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 후 절차



 주치의 등록부터 진료까지 한눈에 보기

주치의 교육 이수	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우편 수령
의료기관 및 주치의 등록	<p>건보공단으로부터 주치의 등록 요청 sms 개별 수신                  sms 수신 후 '요양기관정보마당-장애인건강주치의-주치의등록' 입력                  - 방문서비스 참여는 선택 사항, 필요시 별도 신청                  -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시에도 의료기관 등록은 가능</p> <p><a href="https://medicare.nhis.or.kr/">https://medicare.nhis.or.kr/</a></p> <p><b>※등록 후 바로 정보 조회 가능(등록 정보 오류 확인)</b></p>
수가 작업 및 진료 예약 준비	<p>원내 OCS 진료수가 확인, 홍보물·안내문* 비치                 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식(첨부 참고), 교육상담 매뉴얼 준비</p> <p><b>*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내용 안내 및 동의 필수</b></p>
대상자 등록	<p>장애 유형, 장애 정도, 요청사항, 기본 정보 등 확인                  ※신청 당일 서비스 제공 가능</p>
서비스 제공 및 입력	<p>포괄평가 및 계획수립, 중간점검, 교육상담, 환자관리 등 서비스 제공</p> <p>서비스 입력 : 심평원 시범사업자료제출 시스템에                  대상자 등록&amp;서비스 제공내역 입력</p> <p><a href="https://aq.hira.or.kr/hira_mc">https://aq.hira.or.kr/hira_mc</a></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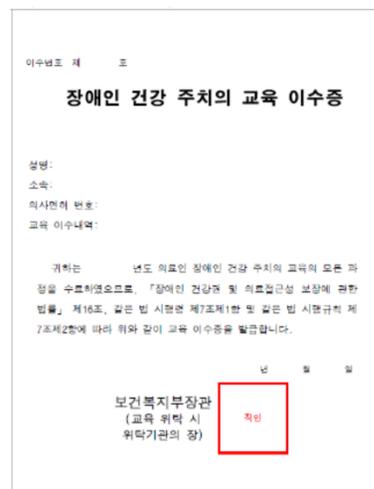
#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

교육 이수 결과 확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을 진행해주세요



## 교육 이수 결과 확인

보건복지부장관 직인이 찍힌  
이수증을 우편 수령합니다.



 **교육 및 이수증 문의**  
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(국립재활원)  
02-901-1305



## 건강 주치의 등록

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 
주치의 등록요청 SMS를 받으면  
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직접  
주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.

<https://medicare.nhis.or.kr/>  
[요양기관정보마당-장애인건강주치의-  
주치의등록]

 **등록 후 바로 정보 조회 가능!**  
등록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세요!

 **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**  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의료개발부  
033-736-3782, 3783

# 수가코드작업과 전산프로그램 준비



## 수가 코드 작업



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제공 및  
수가 청구 위한 **코드작업 &  
본인부담률 작업** 등 전산 시스템 확인·준비

**\*수가청구코드는 「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」 운영지침 p.50 참고**



장애인 건강관리료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정보시스템\*에 관련 내용  
작성 완료한 경우 산정 가능

**\*심평원 시범사업자료제출시스템 입력([http://aq.hira.or.kr/hira\\_mc](http://aq.hira.or.kr/hira_mc)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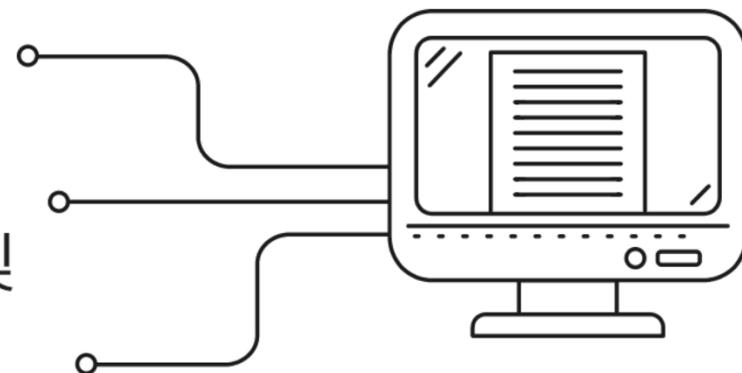


장애인 건강관리료 외 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 
따라 별도로 산정



**서비스내용 및 수가, 청구 문의**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개선부 (033-739-1658, 1660)



# 안내문(안내자료) 및 서식(이용신청사실통지서)준비

## 진료 준비



- ✓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문\* 비치 (지침 p.87 참고)  
※시범사업/요양급여 내용 안내·동의 필수, 안내문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
**\*안내문 포함 사항** 건강주치의 서비스제공내용, 급여비용, 본인부담금, 서비스대상여부(중증 장애인), 각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등
- ✓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각종 서식 출력·준비  
[별지 제6호] 장애인건강주치의 이용신청사실통지서, [별지 제9호]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
**\*사업 서식은 「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」 운영지침 p.89 ~ p.136 참고**
- ✓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카드뉴스(참고)

**\*바로가기**



# 접수와 진료예약 시 확인 사항



 진료 예약 및 첫 내원 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

<p>✓ 장애정보</p>	<p>장애유형(주장애관리, 통합관리 시 확인 필요) 장애정도(중증장애인만 등록 가능) 장애등록시기(포괄평가 입력 항목)</p>
<p>✓ 진료 예약 사유</p>	<p>신청만 또는 평가, 진료 등 예약 사유 확인 *진료시간 배분과 서비스 이용자의 내원 필요 여부 확인</p>
<p>✓ 진료 시 요청사항</p>	<p>대상자개인의 장애특성에 따른 <b>별도요청사항</b> 확인 예약시 <b>장애인 편의시설</b>에 대한 안내</p>
<p>✓ 이용 신청 시 대리인 여부</p>	<p>대리인 신청 시 <b>관계 입증 서류</b> 필요 <b>*서비스 신청시에만 가능, 진료는 대리인 단독 불가</b> *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</p>
<p>✓ 진료비</p>	<p>의료급여, 차상위 : 본인부담금 없음 건강보험 : 본인부담금 10% 발생</p>



# 대상자 첫방문 시 업무 흐름도

🔊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 동시 시행시

## 1 사업설명 및 서류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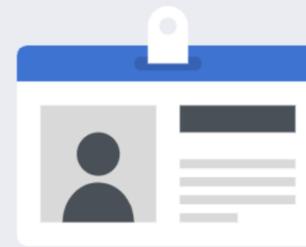


건강 주치의 사업설명 및  
이용 신청사실 통지서,  
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 
서식 작성

\*서식은 첨부자료 참고  
\*신청사실통지서 및 개인  
정보제공동의서는 의료  
기관에서 **3년간** 보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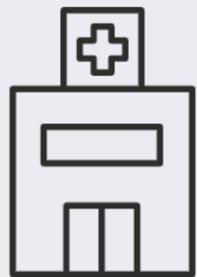
## 2 대상자 등록 (건보공단)

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 
「이용신청사실통지서」 입력  
\*입력완료 후 심평원 시스템으로 연계됨



\*신청만 할 경우 진료비나  
접수비 발생하지 않음.

## 3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



소요시간: 약 30분  
\*환자 개인별 소요시간  
상이할 수 있음.

\*당일 이용 신청 및  
진료 동시 시행 가능

## 4 대상자등록 및 서비스제공내역입력 (건강보험심사평가원)



심평원시스템에 대상자등록후,  
서비스제공 내역 입력

이용자번호 조회(건보)



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
내 서비스제공내역 입력

# 건강관리료 목록 및 제공방법

자세한 내용은 **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, 운영 지침**을 참고해주세요

 <p><b>첫 방문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외래 첫 방문시 본인확인, 장애 정보 등 확인 후 접수</li> <li>· 건강주치의 사업 설명, 상담, 서류 작성 진행 후 등록</li> <li>· 대리인 내원시 이용 신청만 가능</li> </ul> <p><b>*이용신청사실통지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의료기관에 3년까지 보관</b></p>
 <p><b>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(연 1회)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신청일 바로 시행하거나, 신청 등록 후 첫 내원 시 시행</li> <li>· 반드시 환자 본인 내원시 서비스 제공(대리 내원 불가)</li> <li>· 방문진료를 통해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가능</li> </ul> <p><b>예)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+ 방문진료 동시 청구 가능</b></p>
 <p><b>중간점검료 (연 1회)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실시 후 필요 시 연 1회 실시</li> <li>· 2주기 시 포괄평가 대신 시행 가능</li> <li>·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과 같은 날 산정 불가</li> </ul>
 <p><b>교육상담료 (연 8회)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표준화된 교육상담 매뉴얼에 따라 시행</li> </ul> <p>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(<a href="http://www.nrc.go.kr">www.nrc.go.kr</a>)에서 다운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의원 : 질병관리, 건강관리, 장애관리</li> <li>· 병원 : 장애관리</li> <li>· 1대 1로 직접 실시, 장애가 심할 경우, 환자 참여하에 보호자에게 제공 가능</li> </ul>



# 건강관리료 목록 및 제공방법

자세한 내용은 **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, 운영 지침**을 참고해주세요



환자관리료  
(연 12회)

- 거동불편 등 내원 어려운 경우 전화로 교육상담 제공
- 환자상태, 약물복용, 합병증 유무 등 확인을 위해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진 경우 산정(환자 본인부담 없음)  
단, **환자관리료**는 **비대면 서비스**임



방문료  
(연 18회)

- 이동불편 등 내원 어려운 장애인 가정 방문해 건강관리 시행
- 방문진료 : 건강 주치의가 가정에 방문 시 산정\*  
**\*진찰료 및 교통비는 별도 산정하지 않음**
- 방문간호 : 건강 주치의 방문간호사 방문 시 산정\*\*  
**\*건강 주치의 방문간호사 자격 요건**
  - ① 건강 주치의 소속 동일 의료기관 근무
  - ② 별도의 시범사업 교육 과정 이수
  - ③ 근무경력 2년(24개월) 이상 또는 가정전문간호사**\*\*교통비는 별도 산정하지 않음**
- 방문료를 포함한 각 서비스는 **동시시행가능**  
예) 방문진료 + 방문간호 + 포괄계획 + 교육상담



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이외 기존진료(진찰료, 처치, 약처방 등)에 대한 비용은 **종전과 동일하게 부담**하여야 함.



# 청구관련 주요 확인사항



## ✓ 급여목록(의원기준)

\*'23년 기준 수가

수가코드	명칭·분류	금액(원)
	<b>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</b>	
IA601	(일반건강관리)	61,940
IA611	(주장애관리)	61,940
IA621	(통합관리)	92,920
	<b>중간점검료</b>	
IA041	(일반건강관리)	34,840
IA051	(주장애관리)	34,840
IA061	(통합관리)	52,260
IA062	교육상담료 I	14,380
IA064	교육상담료 II	25,320
IA066	교육상담료 III	36,250
IA661	환자관리료	10,310
IA673	방문진료료 I	126,900
IA671	방문진료료 II	88,280
IA681	방문간호료	78,530

## ✓ 명세서 분리

-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이외 모든 검사, 처치, 처방은 **명세서 분리 청구 필요**

## ✓ 청구 날짜

- 건강관리료 수가의 경우 OCS입력 날짜와 심평원 자료제출시스템의 서비스 제공날짜와 **동일 해야함**

## ✓ 방문진료 수가

- 방문진료료 I  
검사, 처치 등 모두 포함 된 수가
- 방문진료료 II  
검사, 처치 등 명세서 분리 시, 방문진료료 II로 청구

장애인가건강주치의

선생님들의

멋진 활동을

기대합니다!

